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 9653 제출연월일: 2025. 4. 8.

제 출 자:정 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비행기를 놓치는 등의 사유로 공항을 이용하지 아니한 미탑승 승객은 납부한 여객공항사용료를 반환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르고 지나쳐 제대로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미환급 여객공항사용료는 사용료 징수 업무 대행자인 항공권 판매자의 잡수익으로 처리되고 있는 상황인바, 미환급 여객공항사용료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항시설을 예정대로 사용・이용하지 아니한 자는 그 여객공항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여객공항사용료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되, 그 소멸시효 완성 전에 여객공항사용료의 반환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여객공항사용료는 국고에 귀속되도록 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65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

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 야 할 것임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시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2조의2(여객공항사용료의 반환청구 등) ①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중 공항이용객에 대하여 부과되는 사용료(이하 "여객공항사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였으나 공항시설을 예정대로 사용 또는 이용하지 아니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 여객공항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여객공항사용료의 반환청구권은 공항시설의 사용 또는 이용이 예정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여객공항사용료는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 따른 교통시설특별회계 중 공항계정에 귀속된다.
 - ③ 공항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1개월 전까지 국토교통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공항사용료의 반환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해당 여객공항사용료를 반환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반환청구 절차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여객공항사용료의 반환청구권을 가진 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항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69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의2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여객공항사 용료의 반환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미리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를 위반하여 공고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객공항사용료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등에 관한 적용례) 제32 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항시설을 예정 대로 사용 또는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32조의2(여객공항사용료의 반
	환청구 등) ①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중 공항이용객에
	대하여 부과되는 사용료(이하
	"여객공항사용료"라 한다)를 납
	부하였으나 공항시설을 예정대
	로 사용 또는 이용하지 아니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 여객공항사용
	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여객공항사용
	료의 반환청구권은 공항시설의
	사용 또는 이용이 예정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
	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여객공항사
	용료는 「교통시설특별회계
	법」에 따른 교통시설특별회계
	중 공항계정에 귀속된다.
	③ 공항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1개월 전까지 국토교
	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공항사용료의 반환청구권

제6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1. • 2. (생략)

<신 설>

3. ~ 6. (생 략)

② ~ ⑥ (생 략)

을 가진 자에게 해당 여객공항 사용료를 반환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반환청 구 절차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여객공항사용료의 반환청구권을 가진 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 항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 다.

제69조(과태료) ① -----

---.

1. • 2. (현행과 같음)

2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 의2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여 객공항사용료의 반환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미리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를 위반하여 공고하지 아니한 자

3. ~ 6.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